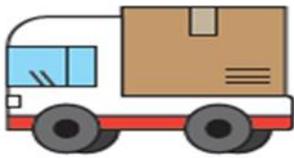


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

☑ 소비기한 표시제?

식품등의 날짜 표시에 '유통기한' 대신 '소비기한'을 표시하는 제도



유통기한

제품의 제조일로부터
소비자에게 유통·판매가
허용되는 기한



소비기한

식품 등에 표시된
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
섭취하여도
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

☑ 표시 대상 제품?

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
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

☑ 표시방법?

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

- ① ○○년○○월○○일까지, 소비기한: ○○년○○월○○일,
- ② 제조일로부터 ○○일까지(제조일 별도 표시),
소비기한: 제조일로부터 ○○일(제조일 별도 표시)
-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

※ 관련 규정: 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(21.8.17. 개정, '23.1.1. 시행)

소비기한 도입 관련 FAQ

*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영업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으로, 추후 관련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·추가될 수 있음('22.2.9. 기준)

질문	답변
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?	<p>✓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행일 이후 제조·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
소비기한을 시행일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?	<p>✓ 시행일 이전('22.12.31)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기한을 미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.</p>
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?	<p>✓ 시행일 이전('22.12.31)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, 자율사항으로 소비기한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영업자 책임하에 가능하나 소비자 오인·혼동 우려 등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.</p>
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?	<p>✓ 관할 허가(등록 또는 신고)관청의 승인 하에 기존 포장지의 '유통기한' 제목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'소비기한'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?	<p>✓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</p> <p>*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,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,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,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등</p>
'EXP', 'Sell by date'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?	<p>✓ 수출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'Expiration date', 'Sell by date'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소비기한 설정 기준이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'Best before'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?	<p>✓ 현재 '품질유지기한(Best before)'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, 당류,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국에서 'Best before'로 표시되었으나,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.
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정보 제공	<p>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> 식품·안전 > 식품표시광고 > 소비기한</p>